IMO 제110차 이사회(COUNCIL)

Ⅰ.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110차 이사회
(The 110th session of the Council)
○ 기간/장소 : '13. 7. 15~7. 19(5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KST 해사안전연구센터 김주환

Ⅱ. 주요 의제 목차

1. [의제 3] 전략, 계획 및 개선
2. [의제 4] 기구의 자원관리
3. [의제 6] 결과기반 예산: 2014~2015년간 예산 영향 개요
4. [의제 7]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VIMSAS)
5. [의제 13] 필수해운수송로의 보호
6. [의제 14] IMO 강제협약에서 행정요건의 정기적 검토
7. [의제 15] 세계해사대학(WMU)
8. [의제 18] 외부협력 사항

Ⅲ.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1	전략, 계획 및 개선

1. 우선순위선별 이사회 작업반 보고서

□ 의제 주요내용

○ C109('12)에서 2014~2015 biennium의 planned outputs 선정 시 필요한 우선순위 선별 잠정기준 개발을 위해 2013년 이사회 작업반 회의를 임시(a one-off meeting) 개최하기로 결정
○ 임시 작업반은 우선순위선별에 'Grid Analysis[1]' 방법론(methodology)을 사용하기로 결정
- 'Grid Analysis'은 '14~'15년의 HLAP에 포함될 모든 planned output에 적용
○ '14~'15년 planned output의 우선순위 선정은 13차 IMO 전략계획에 대한 이사회 특별작업반(CWGSP, '13. 9)에서 작업하고 그 결과를 제28차 총회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 수행

□ 논의 내용 및 결과

○ 다수 회원국이 작업반에 의해 개발된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하며 주관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 이러한 이유로 개발된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14~'15년 biennium planned output 우선순위 선정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아울러 개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성검토, 관리 이사회작업반"(CWGRM, '14년 초 예정)에서 우선순위선정 절차를 어떻게 위험관리 기법 내에 수용할 것인지 검토 지시함

1) Grid Analysis(그리드 기법) :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인 상황에서 각 평가 요소에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 CWG-P 1/2에서 영국이 IMO Planned Output이 자국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제안함

2. 전문위원회 개편

□ **의제 주요내용**

○ 전문위원회 개수 축소(9개 → 7개)

○ MEPC 65 및 MSC 92에서 검토한 7개 전문위원회의 명칭, 작업지침(ToR) 초안 검토

-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CCC)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HTW)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III)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NCSR)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PPR)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SDC)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SSE)

□ **논의 내용 및 결과**

○ 위원회에서 논의한 전문위원회 개편안 최종 승인

- 전문위원회 개수 축소(9개 → 7개)
- 전문위원회 명칭, ToR 및 의제
- NCSR 및 SDC 전문위원회는 첫 번째 회기에 한하여 5일간 통역 제공 결정

3. 기구의 검토(review) 및 개선(reform)

□ **의제 주요내용**

○ 예산 및 지출

- 41개의 직책(33개의 정규 예산 직책 및 8개의 Trading fund 직책)을 차기 biennium에서 삭제하고, 33개의 직책을 낮은 직급으로 재배치

○ 인적자원 및 조직구조

- 기존의 자율근무제, 시간제근무(part-time work) 및 재택근무 규정을 보완하여 6개월간 시범적으로 탄력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를 도입
- 새로운 직원 이동(staff mobility)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연한 조직운영, 직업경력강화 등을 도모
- 인센티브 및 공적표창, 평가체계의 자동화, 적격성 기반 평가 등 성과관리체계(performance management mechanism) 개발
- 직원의 지속적인 우수성과에 대한 표창제도 확대

○ 회의 지원

- 개정될 보고방식 및 절차(오디오 장비 사용 등)의 시범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제안이 C112('14년 예정)에 제출될 예정

○ 기술 협력(TC)

- 국가 해사정책의 핵심 요소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였고, 동 정책 수립이 필요한 개도국에게 기술적 지원 제공 예정
- TC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가의 해사현황을 알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CMP (Country Maritime Profile)를 개발하였으며, TC 63('13. 7 예정)에서 승인 예정

○ 정보 기술

- PaperSmart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IMO 문서(WP, JP 등)를 IMODOCS 웹사이트 등재하고 향후 IMO 협약의 공식카피본도

등재를 시켜 문서출력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임
- GISIS에는 기구의 전략 계획(Strategic Plan) 및 상위이행계획(High-level Action Plan)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관리 모듈을 도입하고 기타 기존 모듈 기능을 강화
- IMO 회의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 회의 오디오 녹음 제공(6개 공식 언어) 시스템을 도입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IMO 검토 및 개선(Review and Reform)절차의 일환으로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주목하고, 사무총장에 감사를 표함

○ IMO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바하마, 파나마 등은 많은 unplanned output들이 위원회 의사규칙 및 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택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따르도록 촉구함

○ 단순히 시간 순으로만 나열된 회의녹음과 관련하여 다수 회원국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회의녹음파일을 의제별로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등 개선방법을 조사하여 C112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4. 사무국 활동에 대한 감독

□ **의제 주요내용**

○ 재무제표, 감사결과 공개, IMO 핵심 직원 재산 공개 제도에 관한 추진을 제안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IMO의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서 공개 제안을 승인하고, 핵심직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계획에 주목함

○ 미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 기구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조달(procurement)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조달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 달성 방법을 다음회기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5. 기구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accountability)

□ **의제 주요내용**

○ IMO의 상위활동계획(High-level Action Plan, HLAP) 수립방식의 개편
- HLAP에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결의서 채택, 협약 개정, 신규협약 개발 등)이 있는 planned output만 포함
- 사무국의 사업계획에 모든 지원 작업 및 IMO의 결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포함

○ 사무국의 사업계획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이사회 및 총회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 보고 예정

□ **논의 내용 및 결과**

○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모든 발언국가가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함에 따라 이사회는 사무총장의 제안에 동의하고 사무국이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함

의제 4	기구의 자원관리

1. IMO 직원 규정/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인적자원

☐ **의제 주요내용**

○ 2014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높이기로 한 UN총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직원 규정 제9조의 9.5 규칙 재정 승인 요청

– (개정 규칙) 직원은 60세를 초과하여 직무를 유지할 수 없으며, 1990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사이에 임명된 자는 62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자는 65세를 초과할 수 없음. 만약 기구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은 예외적으로 그러한 나이 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직원규칙 개정안을 상기 원안대로 승인함

2. 분담금의 납부 및 연체 현황과 IMO협약 제61조의 이행 보고

☐ **의제 주요내용**

○ '13. 4. 30까지 납부되지 않은 회원국 분담금 총금액은 13,471,298 파운드임

– 170개 회원국 및 3개 준회원국 중 '13. 4. 30까지 91개국이 2013년분을 완납하였으며 21개국이 부분 납부 그리고 61개국이 미납하였음

– 40개 이사국의 '13. 4. 30 기준 납부 현황: 완납(29국), 분납(1국), 미납(10국)

○ 2013년 4월 30일 기준 Working Capital Fund의 잔액은 1,640,324 파운드임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회원국 분담금 연체 현황에 주목하고 IMO 협약 61조에 따라 분담금 연체국에 대한 투표권 박탈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다시 밝히면서, 연체된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촉구함

의제 6	결과기반 예산 : 2014~2015년간 예산영향 개요

☐ **의제 주요내용**

○ 현재 IMO 예산구조는 총 7개의 내부기금과 다양한 외부지원/신탁기금으로 구성됨

– 내부기금

① Regular budget(General Fund, 일반기금)

② Working Capital Fund(내부업무기금)

③ Headquarters Capital Fund(본부자본기금)

④ Termination Benefit Fund(퇴직복지기금)

⑤ Training and Development Fund(훈련개발기금)

⑥ Trading Fund(판매기금)

⑦ Technical Co-operation Fund(기술협력기금)

○ 일반기금

– Mixed Zero Growth(MZG) 정책 도입, 직원 비용은 일반기금의 75%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 승인요청

① '14~'15년 중 첫째년도는 Zero Nominal Growth (ZNG), 둘째년도는 Zero Real Growth(ZRG) 목표

② '14년은 ZNG, '15년은 2.9%의 ZRG 시행

– 이 경우 '12~'13 대비 차기 2개년에는 3.4% 인상효과가 있음

○ 직원감축 및 배치
- 사무총장은 29개 핵심 공석(일반기금)에 대한 채용을 시작하고, 33개(6 P 및 27 GS) 일반기금 직책 및 8개(GS) 판매기금 직책을 폐지

○ 사무국에 대한 기능적 검토(functional review) 필요 기금조성
- IMO의 조직개편 및 사무국의 합리적 조직화를 위해 기구의 휴먼기금을 활용한 외부 컨설팅 수행안을 제안하여 아사회 승인요청

○ 특별비상계좌(special contingency account)
- '14~'15 예산은 인플레이션 2.5%, 임금인상률 2.5%[2]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으나, 만약 국제공무원위원회(ICSC)가 2.5%이상의 인상률을 책정할 경우 고용지출은 예산안을 초과하게 될 것임
- 이에 사무총장은 회원국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보다 특별비상계좌를 만들어 상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

○ 회원국 분담금 절감
- 회원국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방법을 제안
  ① 기부인센티브제도(CIS)[3]의 폐지 또는 4년간 중단
  ② 판매기금의 잉여기금의 일부를 회원국 분담금 축소에 사용

○ 일반기금외 기타기금 감축
- 기타기금에 대한 감축(2년 대비 3.4%)안 승인 요청

○ 퇴직부담금(Post-employment liabilities) 조성방법 개정 제안
- 퇴직부담금 조성방법을 개별 부문별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 변경

○ 판매기금 잉여금액의 배분안
- 3개 판매기금 잉여금액 배분안 중 최종 결정 요청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일반기금 예산안
-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제안한 MZG 예산안 승인하는 대신 다수 회원국이 의문을 제기한 일반기금의 75% 직원비용 설정 근거에 대하여 사무총장이 특별이사회(C/ES, '13. 11)에서 추가 설명 및 보고하도록 결정

○ 직원감축 및 배치
-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제안한 41개 직책 폐지 및 29개 직책 충원 계획을 승인하고, 폐지 및 충원예정 직책에 대한 세부정보를 특별이사회(C/ES, '13. 11)에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

○ 사무국의 기능적 검토(functional review) 필요 기금
- 다수 회원국이 휴면기금의 연구개발 신탁기금으로 전용 및 제3자에 의한 기능적 검토 수행을 반대함
- 이에 사무총장은 사무국 자체적으로 우선 기능적 검토를 시행할 것임을 표명함

○ 특별비상계좌(special contingency account)
-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반기금내에 특별비상계좌 설립 승인

2) 법정 임금인상율 및 '13년 5월 기준 UN 환율(1파운드=1.55 US달러)에 대한 추가분
3) Contribution Incentive Scheme. 1988년도에 신설되 제도로서 회원국의 분담금 적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분담금 납부의 시기 및 금액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의 예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회원국에 돌려주는 제도

- 단, 특별비상계좌 기금 조성방법과 관련하여 대다수회원국이 판매기금의 잉여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회는 특별비상계좌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사무총장이 특별이사회(C/ES, '13. 11)에 제출할 것을 요청

○ 회원국 분담금
- '14~'15년 biennium 회원국 분담금 평가액 승인
- 다수 국가가 CIS 폐지 또는 잠정중단은 분담금 조기납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CIS를 유지하도록 결정

○ 일반기금외 기타기금
- 기타기금에 대한 사무총장의 감축 제안을 이견 없이 승인
- 아울러 추가비용절감 가능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IMO의 각종 기금관련 간접경비(overhead cost) 비율에 대한 추가정보를 특별이사회(C/ES, '13. 11)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퇴직부담금 조성
- 모든 IMO 직원의 퇴직부담금(post-employment liabilities)을 퇴직복지기금(Termination Benefit Fund)하에서 통합관리 승인
- 판매기금하에 퇴직부담금은 퇴직복지기금으로 전용 승인
- 향후 기술협력기금에 따른 프로젝트 인원 급여에 대하여 7% 부담금을 부과 승인

○ 판매기금 잉여금액의 배분
- 판매기금 잉여금액 배분안 3개중 2개가 특별비상계좌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판매기급 잉여금액을 특별비상계좌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동 계좌 기금의 조성방법이 제출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특별이사회(C/ES, '13. 11)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의제 7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1. 감사제도의 이행에 관한 경과 보고

□ 의제 주요내용

○ 자발적 감사를 요청한 회원국 및 감사의 수행
- 2005년 12월 자발적 감사 수감 요청 이후, 총 67개 회원국(2개의 준회원국 및 5개의 부속령 포함)이 감사 수감 의사를 통보함. 현재까지 IMO 회원국의 40.6%가 자발적 감사를 신청하였으며, 제109차 이사회 이후로 2개국 증가

○ 감사관 선정 및 가용성
- 63개의 회원국 및 1개의 준회원국으로부터 231명이 감사관으로 선정되었음. 이 중 15%는 여러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 감사관 교육
- 감사관 교육 과정이 연4회에서 연 2회로 감소하였으며, 2회의 해사주관청 워크숍이 추가

○ 회원국 및 참관 감사관에 대한 원조
-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은 회원국들이 감사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원조하고 있으며, 바하마 감사 후 후속조치로서 Freeport에서 워크숍이 개최됨('13. 2. 5~2. 8)

○ 감사 보고서
- 3개의 추가 감사요약보고서(ASR, Audit Summary Reprot)가 2013년 3월 26일자 Circular Letter No.3357로 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55개의 ASR이 회람됨
- 제6차 CASR(Consolidate Audit Summary Report) 발행(C 109/5/1)에 이어 올해도 각

감사 후 ASR이 발행될 것이며 이는 제7차 CASR로 만들어져 제28차 총회에 제출될 것임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자발적회원국감사 시행에 대한 보고 내용에 주목하고 아래 사항을 요청함
- 아직 수감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수감 독려
- 많은 자격 있는 감사관 추천
- 수감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기술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 자발적회원국감사제도 준비작업 지원을 위한 네덜란드의 기부(2만 유로, 약 3천만원)에 감사를 표함

2. 제6차 회원국감사제도 합동작업반 결과보고서

□ **의제 주요내용**

○ 감사제도 체계(Framework) 관련 결과
- 감사요약보고서를 외부(Public or Member State)에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전에 관련 회원국의 승인 필요
- 감사요약보고서, 시정조치계획 및 시정조치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회원국의 코멘트 외부 공개의 승인여부는 회원국의 권한임

○ STCW 1978 협약에 따른 감사 범위
- 회원국 감사는 STCW 협약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감사기능과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STCW 협약에서 회원국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분야만 다뤄야 함

○ 감사제도 절차(Procedure) 관련 결과
- 감사요약보고서 및 회원국 코멘트 공개관련 감사 전 받아야 하는 회원국의 승인에 대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됨
- 시정조치계획은 감사요약보고서와 별도로 공개되어야 함

○ 강제감사 시행으로 인한 감사관 부족문제에 대하여 제5차 작업반에서 제안되었던 3가지 옵션에 대한 검토
- 옵션 1 : 회원국이 추천한 감사관을 이용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
- 옵션 2 :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관을 사무국 직원으로 신규 채용
- 옵션 3 : 옵션 1과 2를 조합하여 회원국 추천 감사관 2명 및 사무국 소속 감사관 1명 이용

○ 감사 후속조치를 위한 감사(Audit follow-up)
- 감사 후속조치(시정조치계획 이행여부 확인)를 위한 감사는 문서기반 감사(document-based audit)로 시행함이 원칙이나 문서를 통하여 시정조치계획 이행여부의 확인이 힘들 경우 현장 감사 시행

○ 감사관 매뉴얼 관련 결과
- 감사관 설명서는 독립된 문서로 두고 Circular letter로 발행
- 필요시 사무국에서 주기적으로 개정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JWGMSA 6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시정조치계획은 감사전 회원국의 승인 하에 별도로 정보차원에서 공개
- 감사관 수 확보 관련 금번 회기에서는 옵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며 단순 주목함
- 감사계획은 C112 이전에 수립되어야 함
- 감사관 매뉴얼은 사무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필요시에 최신화 되어야 하며, circular letter로 발행되어야 함

- 감사관 매뉴얼 승인
- 회원국 감사제도 체계(Framework) 및 절차(Procedure)에 대한 총회결의서 초안 승인
- 과도기간에 대한 총회결의서 초안 승인

* A28('13. 11)이후에 시행되는 자발적 감사시에는 A28에서 새롭게 채택될 회원국 감사제도 체계(Framework) 및 절차(Procedure), III Code를 사용하도록 촉구함

의제 13	필수 해운수송로 보호

☐ **의제 주요내용**

○ 그리스는 서아프리카 해적의 심각성 및 IMO 28차 총회에서 서아프리카 해적 방지를 위한 결의서 채택 필요성을 언급한 의제 문서를 제출함

- 사무총장 이하 IMO 사무국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며, 추후 조치사항 마련 및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사례를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사무국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

☐ **논의 내용 및 결과**

○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 발언 하에 서아프리카 지역 해적 방지를 위한 IMO 총회 결의서 채택에 동의함

○ 이에 사무총장은 동 결의서 초안을 준비하여 제27차 특별이사회('13. 11)에 제출 및 검토 예정

의제 14	IMO 강제협약에서 행정요건의 정기적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제108차 이사회에서는 행정요건경감을 위한 특별운영그룹(SG-RAR)의 작업계획(TOR)을 작성하여 이를 구성하였으며, 제109차에서는 SG-RAR의 향후 작업계획을 승인함. 또한, SG-RAR의 제안대로 PO 8.0.4.3 및 8.0.4.4에 대한 작업완료일을 2014년 및 2015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동 작업을 가능한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SG-RAR의 일정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 본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함

1) 행정요건 목록(inventory) 확장

- 기존 행정요건 목록(C108/INF.2, 덴마크)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검토 실시(28개 신규 행정요건 식별, 3건 불필요 행정요건 삭제)

2) 설문 조사 진행 체계

- 4단계(batches)로 세분화하지 않고, 설문 진행 과정을 하나의 단계로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6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후 응답사항을 취합 분석하기로 결정
- 2013. 5. 7부터 설문조사를 위한 웹이 활성화

3) 기타 사항

- 설문조사의 정성분석을 설문조사 마감일이후에 실시
- 설문조사 웹페이지는 설문조사 마감일에 폐쇄하되, 추후 IMO에서 유사한 작업 수행 시 활용하기 위해 구성 체계는 보존
- 설문조사 통계 결과는 설문조사 웹에 개시
- 설문조사 분석 단계는 임시 검토 회의 시 세부 검토
- SG-RAR의 최종 보고서는 설문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승인 요청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SG-RAR 작업반장의 업무경과 보고를 주목하였으며, 그리스, 칠레 등 회원국의 적극 지지하에 동 특별운영그룹의 변경 작업계획을 승인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촉구하였음

의제 15	세계해사대학(WMU)

☐ **의제 주요내용**

○ 대학의 지속가능한 장기 기금마련 문제는 대학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임

○ 사무총장은 대학 재정 기초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IMO 지원메커니즘(Trading Fund 연간 초과액의 "적어도 80퍼센트" 중 5퍼센트를 기술 협력 기금으로 이전하여 WMU 재정 지원)이 오직 충분한 대학 비축금을 마련하는데만 쓰여야 한다는 견해임

○ 또한 사무총장은 특수 재정비축금 펀드(special Reserve Fund)가 설립되면 IMO의 재정 지원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사회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대학 재정 마련을 위한 신규 메커니즘을 권고하여 주길 기대함

○ 사무총장은 상기 임시 메커니즘이 2014~2015년 동안 승인되어 2015년 춘계 이사회시 대학의 재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2016~2017년까지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건의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사무총장의 WMU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주목하였으며, 다수 이사국의 지지 하에 2014~2015년 WMU의 지속가능한 재정 비축금 마련을 위한 현행 IMO 지원 메커니즘*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Trading Fund 연간 초과액의 약 5%를 기술 협력 기금으로 이전하여 WMU 재정 지원

의제 18	외부협력 사항

1. 정부기구와의 관계

☐ **의제 주요내용**

○ IMO와 NOWPAP을 대변하는 UNEP간 협력을 위한 합의 요청사항 및 IHO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 승인 요청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사항을 이견없이 승인

2.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 **의제 주요내용**

○ 제108차 이사회 이후 2개 신규자문 지위 신청 검토

- Euroshore International(Euroshore)
- the Security Association for the Maritime Industry(SAMI)

○ 제28차 총회 보고를 위한 NGO관련 이사회 검토 사항

- NGOs의 등록현황
- 2012. 3. 1~2013. 2. 28까지 NGO의 IMO 회의 참석 현황
- 2012. 3. 1~2013. 2. 28까지 IMO 사무국의 NGO 회의 참석 정보
- 현재 임시 자격으로 등록된 자문 기구의 승격

① SUPERYACHT BUILDERS ASSOCIATION (SYBAss);
② PACIFIC ENVIRONMENT;
③ CLEAN SHIPPING COALITION (CSC);
④ BUREAU INTERNATIONAL DES CONTAINERS ET DU TRANSPORT INTERMODAL (BIC)
⑤ INTERNATIONAL IRON METALLICS ASSOCIATION (IIMA)

□ **논의 내용 및 결과**

○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7. 15~16일 양일간 NGOs의 IMO 자문지위 적격성 예비심사를 위한 이사회 작업반을 개설하였고, 작업반은 'IMO 자문지위 부여를 위한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의거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검토결과를 보고함

- 신규 자문 지위를 신청한 비정부기구 예비심사
- IMO 임시 자문지위에 있는 비정부기구의 정식 지위 예비심사
- 총회 전 IMO에 등록된 NGOs의 자문지위 유지 예비심사

○ 본회의에서는 작업반 검토결과에 주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결정

- 비정부기구의 신규 자문지위 신청 관련

1) Euroshore International(Euroshore) : 'truly international'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자문기구로 불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함

2) The Security Association for the Maritime Industry(SAMI) : 작업반은 임시 자문지위 부여를 권고하였으나, 이사회는 이를 유보하여 제27차 특별이사회에서 추가 요건* 확인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IMO 자문지위 부여를 위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구의 영구적인 본부, 관리 조직, 관리자 유무가 현재 확인되지 않음

○ 현재 임시 자문지위에 있는 5개 비정부기구에 대해 작업반의 권고대로 정식 자문지위 부여

○ IMO에 등록된 비정부기관의 자문지위 유지 심사 관련

- IMO 자문지위 부여를 위한 지침에 의거 최근 2년간 IMO 회의 참석 이력이 없는 BIPAR의 자문지위를 철회 결정
- 2012~2013년 활동이 미흡한 ISU, IIDM는 그 지위를 유지하되 차기 2년 동안 기구에 대한 공헌도에 주목하여 2014년 이사회에서 철회 여부 결정
- 작업반 회의 중 런던협약 관련 회의에만 한 차례 참여한 이력이 있는 두 비정부기구(Greenpeace, IOI)의 활동을 IMO 공헌 활동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두 기구의 자문지위 유지를 승인하되 차기 이사회에서는 별도의 자문 지위 부여지침이 있는 런던협약 관련 활동은 비정부기구의 IMO 활동 평가 시 제외하기로 결정

3. 국제해사상

□ **의제 주요내용**

○ 2012년도 후보자 모집-회람문 3265은 2012년 4월 11일에 발행되어 2012년 수상을 위한 후보를 정함. 2013년 1월 15일 기한까지 정부 및 각 조직은 후보자를 제출함

- 가나에서 Dr. Thomas A. Mensah 후보자를 신청

○ 2013년도 수상-2013년 수상 후보자 지명을

위해 회람문을 발행할 것임. 제112차 회의 때 검토 및 결정을 위해 회람문 수신시 후보자 지명내역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

□ **논의 내용 및 결과**

○ 이사회는 가나의 단독 후보자인 Dr. Thomas A. Mensah를 2012년 국제 해사상 수상자로 이견 없이 선정함

4. IMO 바다의 의인상

□ **의제 주요내용**

○ 의인상 후보자 추천

– 중국 13건, 크로아티아 1건, 프랑스 6건, 이란 1건, 대한민국 3건, 이태리 2건, 멕시코 1건, 남아공 1건, 영국 1건, 미국 2건, ISU 1건, IMRF 1건

○ '13. 6. 6 사무총장 지정인, 부 사무총장, 법률·외부 협력부 국장은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최종 평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6. 13 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추천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IMO 바다 의인상(The award) 수상자는 1) 폭풍우 속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용감히 수행한 미 해안 경비대 항공팀 소속 Randy J. Hara, Daniel J. Todd (미국 추천) 2) 승객 구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페리선 Tong Chang Qi Du 11호 선원 故 Jiguo Yang (중국 추천)으로 결정

– 추천상(Certificates of Commendation) 수상자는 중국 추천 2건, 남아공 추천 1건, 영국 추천 1건, 미국 추천 1건, 국제해사 구조연합(IMRF) 추천 1건으로 결정

– 추천서(Letter of Commendation) 수상자는 아국이 추천한 501 대양호 선장, 2002 명성호 선장, 808 우성호 선장, 홍콩 선적 Jin Fu호 승무원, 해양경찰 순시선 317호 승무원을 포함하여 중국 추천 5건, 프랑스 추천 1건, 이태리 추천 2건, 멕시코 추천 1건으로 결정